-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-

조례·규칙안 심사보고서

○ **일　　시 : 2022. 12. 23.(금) 15:00**
○ **장　　소 : 본회의장**
○ **안　　건**
-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의회운영위원회

(위원장 유재호)

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. 12.
나. 발 의 자 : 전성균 의원 외 6인
다. 회부일자 : 2022. 12. 20.
라. 상정일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2년 1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전성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나. 주요골자

○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,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. 12.
나. 발 의 자 : 장철규 의원 외 6인
다. 회부일자 : 2022. 12. 20.
라. 상정일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2년 1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장철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2023년 화성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 등을 변경·조정하고, 조례의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에 교섭단체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
○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에 알맞은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2023년 화성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. 12.
나. 발 의 자 : 이해남 의원 외 3인
다. 회부일자 : 2022. 12. 20.
라. 상정일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2년 1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이해남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중 삭감한 세출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
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 및 비공개 방법에 대하여 반영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예산안 심의시 상임위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(안 제70조제3항)
○ 실시간 중계 회의영상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55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규칙안은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 및 비공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0조제3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,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,

○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,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나, 예결위와 상임위간의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, 추후 협의과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　　략

5. 토　론　요　지 : 생　　략

6. 수 정 안 요 지 : 없　　음

7. 심　사　결　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　요 지 : 없　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　　음